

검 토 보 고 서

양주시 거주외국인등 지원 조례안

양 주 시 의 회

전문위원 김형열

양주시 거주 외국인등 지원 조례안

□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

○ 양주시 거주외국인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
보고를 드리겠습니다

□ 본조례 제정이유는

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역
주민과 같이 우의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
므로서 우리지역에 친근감을 가지고 적응
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

□ 본조례안 주요 내용은

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

□ 본조례안을 검토결과

○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업무는 2007. 5. 17
공포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근거하
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우리지역

사회에 적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목적을 둔 조례라고 할수 있습니다

- 안 제4조의 “시장의 책무”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3조와 제6조등에서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의무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
- 안 제6조에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10조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.홍보와, 제11조에서 생활적응에 필요한 소양.지식에 관한 교육. 정보제공 및 상담등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
- 안 제4조 제2항에서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안 제6조에서 지원

대상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지역 여건상 외국인들이 적응프로그램의 구상과 지원사업의 우선적 필요성등도 아울러 파악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